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7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8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7. 18. (월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이행과
담당과장	신지현 팀장(044-203-5761)	담 당 자	김이경 사무관(044-203-5764)

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논의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
- 제14차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개최 -

□ 우리나라와 아세안(ASEAN : 동남아시아국가연합)간 자유무역협정의 상품분야 추가자유화에 대해 논의하고,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14차 이행위원회가 2016.7.19(화)-21(목) 싱가포르에서 개최됨

○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을 이행위원회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,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, 아세안측에서는 Ms. Catherine Wong(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부국장)이 이행위원회 수석대표로 하여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

○ 동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제23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

□ 금번 이행위원회 주요 의제인 상품협정의 추가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형성된 기본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될 계획임

○ 특히, 지난 제13차 이행위원회('16.2월)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각국의 관심품목 교환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임

○ 아울러, 금년 1월 1일부터 일부 국가간 발효*된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(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,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및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첨부 등)의 전체 국가간 조속한 발효 문제도 논의할 계획

* 현재 한국-태국간('16.1.1), 한국-미얀마간('16.2.11), 한국-싱가포르('16.4.6)간 공식적으로 발효된 상태

** 개정의정서 발효시점은 '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이상의 국내절차 완료를 여타 당사국에 통보하는 날'을 기준으로 결정(개정의정서 제10조)

- 구체적으로 △연내 통보시 '16.1.1일 발효, △'16년 이후 통보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중 나중 통보국의 통보일 후 두 번째 달 1일 발효

□ 또한,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제23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통관 관련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

○ 특히, 업계가 빈번하게 요구해 온 원산지증명서 절차의 간소화와 아세안 현지 세관에서의 과도한 요구*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

* 일부 아세안 국가의 경우, 전자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대해 까다롭게 적용하는 사례 발생 등

[별첨1]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

[별첨2]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주요 내용

[별첨3] 한-아세안 교역규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신지현 팀장(☎ 044-203-5761), 김이경 사무관(☎ 044-203-57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18 17:18:31

참고 1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경과

□ '04.11월 한-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선언

□ 2006.8.24 상품협정 서명

※ 태국은 국내 정치 사정을 이유로 서명에 불참하였으나, 2007.12월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, 2010.1.1 한-태국 간 상품협정 발효

□ '07년 상품협정, '09년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순차적 발효

- 상품분야의 경우 일반품목(품목수와 수입액 기준 모두 90%) 및 민감품목(10%)으로 나누어 일반품목은 '12년*까지 관세철폐

* 다만, 베트남('18년)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('20년)의 경우 예외 인정

□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 이행위원회 및 4차례 임시위원회 개최

○ 제1차 이행위원회(2009.10.12-14, 서울)
○ 제2차 이행위원회(2010.3.10-12, 필리핀)
○ 제3차 이행위원회(2010.7.28-30, 캄보디아)
○ 임시이행위원회(2010.12.9-10, 아세안 사무국)
○ 제4차 이행위원회(2011.3.9-11, 서울)
○ 제5차 이행위원회(2011.6.13-16, 베트남)
○ 이행위원회 특별회의(2011.12.20-21, 인도네시아)
○ 제6차 이행위원회(2012.2.28.-3.1, 라오스)
○ 제7차 이행위원회(2012.7.10.-11, 아세안 사무국)
○ 제8차 이행위원회(2013.6.25-27, 서울)
○ 이행위원회 추가자유화 특별회의(2013.9.16-17, 서울)
○ 제9차 이행위원회(2014.4.26-28, 인도네시아)
○ 제10차 이행위원회(2014.7.14-16, 서울)
○ 이행위원회 추가자유화 특별회의(2014.11.17-18, 아세안 사무국)
○ 제11차 이행위원회(2015.1.27-29, 태국)
○ 제12차 이행위원회(2015.5.12-14, 서울)
○ 제13차 이행위원회(2016.2.2-4, 서울)

참고 2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주요 내용

	현행	개정내용
1.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		
1)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명문화	협정상 규정 부재	협정상 규정 도입
	☞ 지금까지 이행위원회 합의를 근거로 인정하여 왔으나, 협정에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불확실성 제거	
2) 기업별 부가가치기준 선택 허용	국별 일률적 적용 (우리나라: 공제법)	기업별로 공제법 또는 집적법 중 선택 적용
	☞ 기업별로 유리한 부가가치기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특혜관세 활용이 용이	
3) 사전심사 조항 도입	협정상 규정 부재	수입자/수출자/생산자가 ①품목코드, ② 관세평가 관련 문의, ③ 원산지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수입前 사전적으로 심사 요청 가능 (가능한 범위내)
	☞ 기업에서 FTA 혜택 향유 가능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인한 후 수출입할 수 있어서 실제 수출입시 수입국의 특혜관세 거부 또는 추후 관세추징의 우려 해소	
4) 투명성 규정 보완	GATT 제10조 준용	- 통관 관련 법령/정보를 대중에 공개 - 통관 관련 문의처 신설
	☞ 기존 기본적인 투명성 조항에 더하여, 보다 구체화된 통관 관련 정보를 기업에 신속히 제공 가능	
2. 상호주의 제도 개선	한국과 아세안 5개국(인니, 태국, 필리핀, 캄보디아, 베트남)이 운영중	- 한국과 아세안 4개국(인니, 태국, 필리핀, 캄보디아)간 상호주의 제도를 유지하되, 적용 품목 확대 금지 - 한국과 여타 6개국은 상호주의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
	☞ 현재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 상호주의 제도를 일부 폐지 및 확대 적용 금지함으로써 한-아세안간 교역 촉진 기대	
3.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첨부	협정상 목록만 존재	연도별·품목별 세율 명시화
	☞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아세안측 세율을 파악할 수 있고, 2024년까지 연도별 적용세율을 적시함으로써 향후 각국이 적용할 세율을 명확화	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18 17:18:31

참고 3 한-아세안 교역규모

※상품무역협정 2007년 6월 발효 ※서비스협정 2009년 5월 발효 ※투자협정 2009년 9월 발효

□ 교역 현황

< 한·ASEAN 연도별 무역 현황(백만불, 전년 동기 대비 %) >

구 분	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16년5월
수출	금액	32,066	38,749	49,283	40,979	53,195	71,801	79,145	81,997	84,577	74,860	29,461
	증가율	16.9	20.8	27.2	△16.8	29.8	35.0	10.2	3.6	3.1	△11.5	△5.2
수입	금액	29,743	33,110	40,917	34,053	44,099	53,121	51,977	53,339	53,418	45,037	17,444
	증가율	14.1	11.3	23.6	△16.8	29.5	20.5	△2.2	2.6	0.1	△15.7	△7.3
무역규모		61,809	71,859	90,200	75,032	97,294	124,922	131,122	135,336	137,995	119,897	46,905
증가율		15.5	16.3	25.5	△16.8	29.7	28.4	5.0	3.2	2.0	△13.1	△5.9
무역수지		2,323	5,639	8,366	6,926	9,096	18,680	27,168	28,658	31,160	29,824	12,018

<2016년 5월 한·ASEAN 품목별 교역현황(백만불, 전년대비%), MTI 4단위 >

순위	수 출			수 입		
	품목명	금액	증가율	품목명	금액	증가율
1	집적회로반도체 (8311)	4,153	△4.1	집적회로반도체 (8311)	1,491	△28.3
2	무선통신기기부품 (8128)	2,161	15.8	천연가스 (1340)	[illegible]	△32.4
3	선박 (7461)	1,251	35.3	무선통신기기부품 (8128)	1,149	192.8
4	경유 (1332)	1,209	△54.7	직물제의류 (4412)	785	3.0
5	휘발유 (1331)	1,051	1.3	중유 (1335)	[illegible]	△24.9
6	평판디스플레이 (8361)	922	48.8	유연탄 (1322)	[illegible]	△29.5
7	합성수지 (2140)	919	△10.0	편직제의류 (4411)	[illegible]	20.3
8	해양구조물 (7462)	771	127,322.9	컴퓨터부품 (8136)	309	15.4
9	편직물 (4360)	761	△6.1	원유 (1310)	308	△36.4
10	인쇄회로 (8343)	659	27.1	TV카메라및수상기 (8124)	306	1,338.1
	총계	13,857		총계	7,516	

□ 투자 현황

< 한국의 對ASEAN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 : 건, 백만불, 전년대비%)

구 분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-1Q
건 수	994	1,479	2,307	2,535	1,779	1,981	2,115	2,101	2,455	2,524	2,785	768
증가율	25.2	48.8	56.0	9.9	△29.8	11.4	6.8	△0.7	16.8	2.8	9.78	30.6
금 액	970	3,633	6,531	10,502	6,286	7,102	6,326	4,506	4,572	4,990	6,359	981
증가율	28.0	274.5	79.8	60.8	△40.1	13.0	△10.9	△28.8	1.5	9.1	28.4	10.6

< ASEAN의 對韓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 : 건, 백만불, 전년동기대비%)

구 분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-1Q
건 수	177	163	159	197	196	222	222	180	186	223	214	50
증가율	22.1	△7.9	△2.5	23.9	△0.5	13.3	0	△18.9	3.3	19.9	△4.0	47.1
금 액	641	703	595	985	576	1,636	742	1,681	618	1,785	2,852	571
증가율	2.6	9.5	△15.3	65.6	△41.6	184.1	△54.6	126.7	△63.2	189.2	59.7	433.6